

수원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6가단253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836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6가단2539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임채용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24,6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가. 주위적으로 피고 C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예비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 안양지점(이하 '이 사건 안양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이었던 사람,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아래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 D 안양지점은 '이 사건 안양지점', 5,000만 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2. 선고 2018고단242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노1595(항소기각),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7층에 있는 D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법인보험대리점(GA) (주)D 산하의 독립대표가 되면 독립운영권을 보장하고 대표수당과 수금수당을 지급한다. 독립대표는 사무실을 자기 비용으로 임차하여야 하니 임대차보증금과 집기류 비용을 합쳐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내가 직영하던 안양지점의 모든 권한과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립 법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지 못하여 F(주) 산하의 G지사 소속 지점에 불과한 피고인의 배우자 C 운영의 D지점의 보험사코드를 빌려서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없었고,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안양지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은 2019. 2. 19.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424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공탁자에게 공소장 기재 금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공탁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9호)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달리 기망사실을 부인하나, 위 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변제공탁 항변에 관하여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참조).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고, 또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공탁을 한 때에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인데, 이 사건 공탁금은 원본에 상응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일부 공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원인에 손해배상채권 원리금 전액의 변제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 전부가 변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탁금 액수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본과 동일하고, 이 사건 공탁원인에 '공소장 기재 금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손해배상채권 원본에 충당할 의사로 공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공탁일인 2019. 2. 19.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금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채권은 5,000만 원에 대한 2015. 7. 27.부터 2019. 2.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924,658원[= 5,000만 원 × 연 5% × (3 + 208/365)]이 남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8,924,6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여 원금이 전부 변제되고 지연손해금 8,924,658원만 남은 이상, 주위적 청구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청구취지 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판사 노한동